

<의안번호 제2007 - 63호>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2.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12. 4.

2. 제안이유

-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보건지소를 한 곳에 모아 산만한 소재지를 정비하고 면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
- 당초 계획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함
- 건물이 협소 및 노후로 벽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진료환경개선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m ²)	예정금액	비고
계					2,370,608	
주상면행정타운설치	토지	주상면 도평리 562 외 8필지	토지	4,774	483,000	(당초면적:2,772)
	건물		건물	926	1,360,000	
주상보건지소	건물	주상면 도평리 562번지 외 8필지	건물	335	527,608	토 지 (주상면 행정타운과 연계)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 제14조

5. 관련자료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취득대상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1	토지	소 계	4,474	483,000	2008년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	최도현	군비 (당초면적 :2,772)
		주상면 도평리 562	132					
2		주상면 도평리 716	416					
3		주상면 도평리 716-1	265					
4		주상면 도평리 718	1,380					
5		주상면 도평리718-1	579					
6		주상면 도평리 721-1	908					
7		주상면 도평리 721-2	255					
8		주상면 도평리 748-1	334					
9		주상면 도평리 748-2	205					
10	건물	주상면 도평리 562 외 8필지	926	1,360,000	2008년		거창군	
11	건물	주상면 도평리 562 외 8필지	335	527,608	2008년	주상면보건지소 이 전 신 축	거창군	국318,405 도159,203 군 50,000

6. 검토의견

-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거창군 도평리 562 외 8필지에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및 주상면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 현 주상면사무소는 1988년 건립되어 20년 정도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은 주상면 도평리 562번지 외 8필지에 부지면적 4,474㎡, 건물면적 926㎡로 총사업비 1,843,000천원 중 토지매입비 480,000천원, 건물신축비 1,360,000천원으로 면사무소(1층), 복지회관(2층)을 통합적으로 한곳에 설치하는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연계하여 보건지소도 해당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그러나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중 거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우회도로 예정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복합타운을 설치하는데 저촉되지 않도록 군 관리계획상 도로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주상면 보건지소는 1987년 건립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상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 주상면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27,608천원 중 이전건축비 477,608천원(국비 318,405천원, 도비 159,203천원)은 확보[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4379('07.10.17) 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되었으며, 군비(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 50,000천원을 '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